
『繼後膽錄』의 기술방식과 法外繼後에 대한 재검토

고 민 정
(강원대학교 강사)

머리말

- I. 『繼後膽錄』의 기술방식
 - II. 『別繼後膽錄』과 法外繼後
- 맺음말
-

● 투고일: 2014. 2. 17. ● 심사일: 2014. 2. 17. ● 게재확정일: 2014. 3. 6.

요약

본 논문은 『계후등록』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조선 후기 가계계승 연구에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계후등록』은 예조에서 국가로부터 허가된 계후사실과 조정에서 논의된 관련 사실을 기록하여 향후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현존하는 『계후등록』은 17~19세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략 15,000건의 계후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그 내용에 따라 『계후등록』과 『별계후등록』으로 구분되며 규장각과 장서각에 분산되어 소장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더불어 『별계후등록』의 내용을 통해 과생된 범외계후의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였다. 범외계후는 조선 후기 입후제 운영의 특징으로 이해되었으나 그 기준을 『경국대전』으로 한정하였다는 문제가 있으며 그 유형 또한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정리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범외의 의미는 시기에 따라 변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선 후기의 제도적 변화 및 당시의 사회적 정서와 함께 고찰되어야 하겠다.

주제어 : 가계계승, 계후등록, 별계후등록, 범외계후, 입후

머리말

조선 후기 가계계승에 관한 연구에서 입후의 성격을 구명하는 일은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이다. 대략 반세기 전 입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된 이후로¹⁾ 입후제의 성립과 운용²⁾, 입후의 시기 및 계층에 따른 확산³⁾, 사족 가문의 입후 사례 및 갈등양상⁴⁾, 입후에 대한 유학자의 견해와 인식⁵⁾, 입후의 유형⁶⁾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실록 뿐 아니라 계후등록, 사마방목, 족보, 호적, 문집, 고문서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繼

- 1) 金斗憲, 1983,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崔在錫, 1996,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 2) 박경, 2011, 「罷繼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법 운용-장서각 소장 『繼後臚錄』을 중심으로-」, 『장서각』 25, 한국학중앙연구원; 박경, 2011,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 3) 李舜九, 1996, 「朝鮮中期 冢婦權과 立後의 강화」, 『古文書研究』 9·10, 韓國古文書學會; 마크 피터슨 저, 김혜정 역, 2000, 『儒敎社會의 創出-조선중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일조각; 권내현, 2009,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정금식, 2010, 「조선시대의 가계계승법제」, 『서울대학교 法學』 51, 서울대학교; 박종천, 2012, 「조선 후기 유교적 가족질서의 확산과 의례적 양상-입후(立後)와 입양(入養)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132, 퇴계학연구원.
- 4) 권내현, 2008,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허원영, 2007, 「한말 한 중가의 입후(立後)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 : 東萊鄭氏 鄭蘭宗 중가의 고문서 자료를 통한 재구성」, 『사회와 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 5) 김남이, 2009, 「18세기 喪·祭禮 실천과 宗統의 이상-星湖 李瀼의 承重·立後 논의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5, 동양고전학회; 박종천, 2010, 「의례적 계승인가, 사회적 구휼인가? : 조선후기 입후와 입양에 대한 다산의 논의」, 『다산학』 16, 다산학술문화재단.
- 6) 고민정, 2013, 「17세기 장자의 계후와 그 특권적 성격」, 『태동고전연구』 31, 태동고전연구소.

後臚錄』은 예조에서 입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던 것으로7) 입후의 연구가 시작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인용되는 자료이다.8)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계후등록』을 활용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대별된다. 첫째는 『계후등록』을 소장처별로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 방식이다. 이는 1980년대 규장각본을 중심으로 시기에 따른 입후의 변화과정을 고찰한 연구가 대표적이며9) 현재까지 통용되는 입후의 일반적인 사실은 이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샘플을 추출하여 경향성을 밝힌 것이나 통계를 활용한 양적 연구에 치중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한편 최근에는 장서각본을 바탕으로 18세기 罷繼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10) 둘째는 특정 시기 및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17세기 계후자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연구,11) 첩자에 의해 이루어진 가계계승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적서간의 봉사쟁송 사례를 고찰하는 연구,12) 조선 후기 입후 유형에 주목하여 타인의 장자를 입후한 사례를 고찰한 연구에서13) 규장각본 『계후등록』이 이용되었다.

7) 등록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참고된다.

김혁, 2000, 「藏書閣 소장 臚錄의 문헌학적 특성」, 『藏書閣』 4, 장서각; 延甲洙, 2000, 「朝鮮後期 臚錄에 대한 研究」, 『外大史學』 12, 한국의국어대학교; 金赫, 2002, 「朝鮮後期 中央官廳 記錄物에서 臚錄의 위상」, 『書誌學報』 26, 서지학회; 이형중, 2012, 「조선시대 등록(臚錄)체계의 기록학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서울대학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8) 『계후등록』의 소장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대표적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규장각, 장서각으로 축약하고 판본을 밝힐 때에도 규장각본, 장서각본으로 표기하겠다.

9) 최재석, 앞의 책, 588~646쪽.

10) 박경, 2011, 앞의 논문.

11) 김두헌, 앞의 책, 285쪽.

12) 배재홍, 1995, 「朝鮮後期の 庶孽 許通과 身分地位의 變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4~260쪽.

이렇듯 『계후등록』은 조선 후기 가계계승을 이해하는 주요자료로서 이용되었으나 자료의 중요성과 활용도에 비해 자료의 기초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¹⁴⁾ 이는 『계후등록』이 규장각과 장서각 양쪽에 분산되어 있고 분량이 방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탓이다. 그 때문에 피터슨에 의해 규장각본과 장서각본의 상관관계가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¹⁵⁾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계후등록』은 특정 시기 및 특정 소장본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되거나 일부 내용만이 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거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이용은 사례의 제시를 통해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 없이 특정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시기별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계후등록』의 자료적 성격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그에 따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계후등록』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가계계승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계후등록』의 분량은 모두 31책으로 대부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일부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입후가 가계계승의 방식으로 적극 활용되는 17세기에서 19세기에 해당된다. 이들을 유기적으로 고찰하여 사료적 특징과 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조선 후기 입후 현상을 종합적으로

13) 고민정, 앞의 논문.

14) 규장각본 『繼後瞻錄』과 『別繼後瞻錄』에 대해서는 1980년대 초반에 개괄적인 해제가 있었다.

崔在錫, 1980, 「朝鮮時代의 養子制와 親族組織」, 『歷史學報』, 역사학회(최재석, 앞의 책에 재수록); 서울大學校圖書館 편, 1982,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史部 2) V』, 서울大學校出判部, 141~142쪽·162쪽.

15) 피터슨, 앞의 책, 174~175쪽.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별계후등록』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法外繼後의 의미를 재검토하여 입후제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 『繼後臚錄』의 기술방식

1. 繼後立案과의 비교

조선시대의 입후는 生家와 養家의 수수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대외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했다. 『經國大典』에는 입후의 조건, 범위, 한계가 분명하게 명시되었으며 이는 국초부터 한말까지 기본적인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국왕의 윤허를 받아 최종적으로 입후가 성립되면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증빙문서로서 繼後立案을 발급하였고 養家에서는 이를 통해 계후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해당 관청에서는 입후사실을 별도로 정리한 『繼後臚錄』을 편찬함으로써 향후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였다.¹⁶⁾

입후 사실을 증빙하는 문서로서 기능하던 계후입안은 입후의 절차에 따른 문서의 行移 과정이 모두 전사되어 있기 때문에 입후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에 필수적인 자료이다.¹⁷⁾ 그러나 계후입안은 입후의 당사자들이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또한 보관 과정에서 산실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계후입안의 숫자

16) 김혁, 2000, 앞의 논문, 16~17쪽; 연갑수, 앞의 논문, 195쪽.

17) 피터슨, 앞의 책, 172~174쪽.

는 중복자료를 포함하여 67건에 불과하다.¹⁸⁾ 그러므로 이를 통해 입후의 유형을 구분하고 시기적인 특징을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계후등록』이 주목된다. 『계후등록』은 예조의 屬司 稽制司에서 입후의 청원 내용을 검토한 뒤 국왕에게 올린 啓目的 내용을 축약하여 기록한 것이다. 비록 예조의 입장에서 입후의 청원 내용이 정리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요약과정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포함되었고 간접적으로 입안신청자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로서 이용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17~19세기의 계후사실에 대한 대략 15,000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계후입안에 비해 양적으로 풍부하다는 이 점이 있다.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는 1627년 광산김씨 金光繼가 동생 金光實의 셋째아들 입후하는 사실을 기록한 계후입안과 『계후등록』의 형태를 비교한 것이고 A와 B는 수록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각각을 번역한 것이다. 계후입안(A)에는 입후 청원자인 양부 김광계가 올린 所志와 양쪽 가문에서 입후를 원한다는 내용의 條目, 양측 가문의 증인이 올린 조목, 예조의 견해와 임금의 재결까지의 복잡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계후등록(B)은 입안청원자와 생부 및 계후대상자, 그리고 증인의 인적정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으며 그 아래 입안의 담당자와 임금의 재결까지 기록하여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더욱이 난외에는 양부의 성명과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쉽게 색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¹⁹⁾

18) 최연숙, 2005,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35쪽.

19) 이 같은 작업은 등록이 편찬된 이후에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A. 천계(1627) 7년 12월 일 예조입안²⁰⁾

이 입안은 계후를 위한 것임. 이번에 올린 예조계목에,

“유학 김광계의 소지 내용에, ‘제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동생 광실의 셋째 아들 김렴을 계후하고자 -(3자 결락)- 동의·정장하여 여타의 예에 의거하여 입후할 것’을 소지함.

김광계의 조목 내용에, ‘제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동생 광실의 셋째아들 김렴을 계후하고자 양쪽 집안이 동의하여 정장한 것이 적실합니다.’ 김광실의 조목 내용에, ‘형 광계가 적처와 첩에게 아들이 없어 저의 셋째 아들 김렴을 계후하고자 양쪽 집안이 -(3자 결락)- 적실합니다.’

김광계의 처남 생원 이근후와 김광실의 처남 유학 이찬 등의 조목 내용에, ‘김광계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그의 동생 김광실의 셋째 아들 김렴을 계후하고자 양쪽 집안에서 동의하여 정장한 것이 적실한 일입니다.’”

소지와 조목에 의거하여 상고하면 대전 입후조에 적처와 첩에게 아들이 없는 자는 관에 고하여 동종의 지자를 후사로 삼는다고 하였고 주에 양가의 부모가 함께 명하여 세운다는 것이 실려 있으니, 앞의 김렴을 김광 -(2자 결락)- 어떠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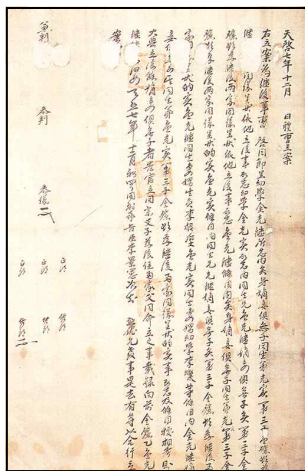
천계 7년 12월 4일 동부승지 신 이경헌 담당.

계의 내용대로 할 것을 윤택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입안함. -(1자 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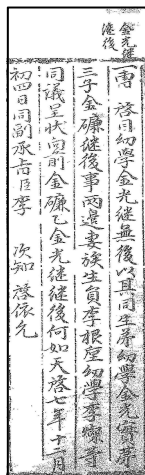
		정랑	좌랑
검판서	참판	참의(압)	
		정랑	좌랑
		정랑	좌랑(압)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2, 『古文書集成 一 - 光山金氏 烏川古文書-』, 13~22쪽. -(3자 결락)-은 원문의 결락된 글자 수 추정하여 표시한 것으로 이하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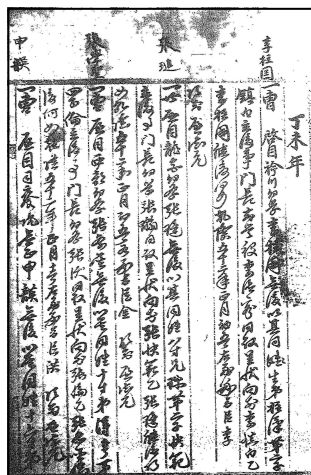
【그림 1】 계후입안의 일반적 형태



【그림 2】 계후등록의 일반적 형태



【그림 3】 계후등록의 거주지정보 수록 형태



B. [김광계 계후]²¹⁾

하나. 예조 계목에, 유학 김광계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그의 동생 유학 김광실의 셋째아들 김림을 계후하는 일이다. 양쪽의 처족 생원 이근후·유학 이찬 등이 동의하여 정장하였으니 앞의 김림을 김광후의 계후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천계 7년(1627) 12월 4일 동부승지 이 담당.

계의 내용대로 할 것을 윤허함.

예조의 계목을 축약하여 핵심적인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였던 『계후등록』의 기술방식은 시기에 따른 변화 없이 지속되었으나 18세기 후반

21) 규장각본 『繼後膳錄』 2, 32a면. “天啓七年丁卯(1627) … [金光繼後] 一, 曹啓日, 幼學金光繼無後, 以其同生弟幼學金光實第三子金礪繼後事. 兩邊妻族生員李根亘幼學李燦等, 同議呈狀, 向前金礪乙, 金光繼繼後何如? 天啓七年十二月初四日, 同副承旨李次知. 啓依允.” []은 난의주기를 표시한 것임.

부터는 養家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다. 이는 1784년 예조판서 嚴壽이 계후문서는 인륜을 바로잡는 일과 관계되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계목의 내용에 계후인의 거주지를 명시하지 않아 그 내용이 소략함을 지적한 뒤, 朝官 이외의 生員·進士·幼學의 경우 某部, 某邑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할 것을 건의한 데에서 비롯되었다.²²⁾

【그림 3】은 1787년 李柱國, 張璉, 張學聖, 申諷의 계후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이 중에서 앞의 세 사람은 직역이 유학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거주지가 衿川, 龍宮, 西部로 명시되었으나 신영은 司饗院僉正이었기 때문에 거주지가 생략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1784년 이후의 기록인 규장각본 『계후등록』 14책에서부터 청원자의 거주지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하며²³⁾ 이는 19세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덧붙여 규장각본 『계후등록』 18책의 1826년 기록부터는 생가의 거주지 역시 별도로 기록되었기 때문에²⁴⁾ 이후의 사례에 대해서는 양쪽 가문의 지역적 정보를 함께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소장처별 『계후등록』의 특징

현존하는 『계후등록』은 모두 31책으로 규장각에 29책이, 장서각에 2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17~19세기의 사안으로 도합 235년간의

22) 『日省錄』 正祖 8年 2月 8日(甲子). “禮曹判書嚴壽啓言, 繼後文書, 卽正人倫之事關係甚重, 而自前啓目中, 不書繼後人居住, 故見其文書, 不知爲何方人, 事甚疏略. 今後則朝官外, 生進幼學, 則以某部某邑區別書錄, 俾重其事面似好. 從之.”

23) 1785년 德山에 거주하는 故學生 孟儒다가 20촌 동생의 둘째 아들을 입후하는 사례부터 청원자의 거주지가 본격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규장각본 『繼後謄錄』 14, 1a면).

24) 1826년 瑞山에 거주하는 故學生 金晦柱가 楊州에 거주하는 20촌 동생 넷째아들을 입후하는 사례부터 양쪽 가문의 거주지가 모두 기재되었다(규장각본 『繼後謄錄』 18, 9b면).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전체 분량은 14,976건에 달한다. 소장처별로 분류하면 규장각본에 241년간의 13,800건이, 장서각본에 44년간의 1,176건이 수록되어 있다.²⁵⁾

규장각본은 크게 『계후등록』과 『별계후등록』으로 구분되었고 『별계후등록』은 “법외계후등록”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表題가 “법외계후등록”이고 卷首題가 “별계후등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표제는 등록이 완성되고 난 뒤 후대에 붙여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수제를 따라 “별계후등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²⁶⁾

기존의 견해에 따르면 『계후등록』은 『경국대전』의 법례에 위배되지 않는 계후의 기록으로, 『별계후등록』은 『경국대전』의 법례에 위배되는 계후의 기록으로 양자를 구분하였다.²⁷⁾ 그러나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계후등록』에는 법전의 조문에 맞지 않은 사례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 『별계후등록』에도 법전의 조문에 부합하는 사례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후등록』은 대다수가 『경국대전』 「입후」에 근거하여 계후가 허가된 사례를 수록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罷繼에 대한 정보도 함께 포함되었다. 『계후등록』에서 과거를 기록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계후사실을 交周하고 그 사유를 첨언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과거 청원의 내용과 결과를 축약하여 기록한 방식이다. 과거 청원은 생가의 절사, 昭穆의 착오, 거짓 청원으로 성립된 계후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며 이는 『별계후등록』에 수록된 사례들과 동일한 성

25) 자세한 내용은 말미의 【부표】가 참고 된다.

26) 기존의 용례를 살펴보면 김두헌과 피터슨은 “법외계후등록”이라 하였고 최재석은 “법외계후등록”이 “별계후등록”과 동일하다고 지적하였지만 주로 전자를 사용하였다. 이와 달리 서울대학교도서관에서 발행한 『奎章閣圖書解題』에서는 “별계후등록”으로 지칭되는 등 양자가 혼용되었다.

27) 최재석, 앞의 책, 590쪽; 593쪽; 636쪽.

격을 지닌다. 또한 드물지만 타인의 장자를 계후한 사례 및 양측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생·양가의 동의 없이도 입후가 성립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²⁸⁾ 모든 사례가 법전을 준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별계후등록』은 법전의 내용과 다른 입후청원에 대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생가 및 양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둘째 타인의 장자 및 독자 내지 죽은 자를 계후하기 위한 경우, 셋째 가계승계를 둘러싼 가문 내의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확대된 경우, 넷째 다양한 이유로 과거를 청원한 경우 등으로 정리된다. 이외에도 이성수양자가 양부의 성을 모칭하였다가 復姓한 내용, 계후자가 조부이상의 봉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 입후를 관에 신고하는 절차에 관한 논의, 국가에서 공신과 유현의 봉사손을 지정하는 논의 등 일률적으로 정의하여 언급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전체의 3.4%에 해당되어 그 비율은 높지 않으나 일반적인 계후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²⁹⁾

결론적으로 『계후등록』과 『별계후등록』은 모두 계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양자에 수록된 내용의 경향성을 고려할 때 『계후등록』은 일반적인 계후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별계후등록』은 특별한 계후의 사실 및 계후와 관련하여 조정에서 논의된 사실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등록의 내용을 비교하고 전체 분량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계후등록』은 특별한 계후 사실보다는 일반적인 계후 사실을, 『별계후등록』은 일반적인 계후 사실보다는 특별한 계후 사실을, 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향성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논의는

28) 장자를 계후한 사례는 1795년 沈綱之의 후사를 청원하는 것에서 확인되고 양측 부모가 모두 사망한 사례는 1629년 權侗의 후사를 청원하는 것에서 확인된다(규장각본 『繼後謄錄』 15, 19b면; 규장각본 『繼後謄錄』 2, 43a면).

29) 1638년 李遠, 琴克恭, 柳觀亨, 許樞, 鄭侑, 楊暄의 계후 청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규장각본 『別繼後謄錄』 1, 6b~7a면).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장서각본은 그 존재와 내용이 규장각본에 비해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의 연구를 통해 일부가 알려지게 되었다.³⁰⁾ 2책 중 1책은 18세기 초반의 시기를, 나머지 1책은 19세기 후반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그 중 18세기 초반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계후등록』은 규장각의 『별계후등록』과 같은 성격을 가진 기록물로 추정된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일반적인 계후사실보다 특별한 계후사실을 보다 많이 수록하고 있어 114건의 내용 중 87건이 파악과 연결되는데³¹⁾ 이는 『별계후등록』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규장각본 『별계후등록』 7책에서 논의되던 양녕대군의 봉사순에 대한 내용이 이 책의 첫머리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제상으로는 『계후등록』이지만 그 성격은 “별계후등록”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며 수록 연도를 고려할 때 규장각본의 7책과 8책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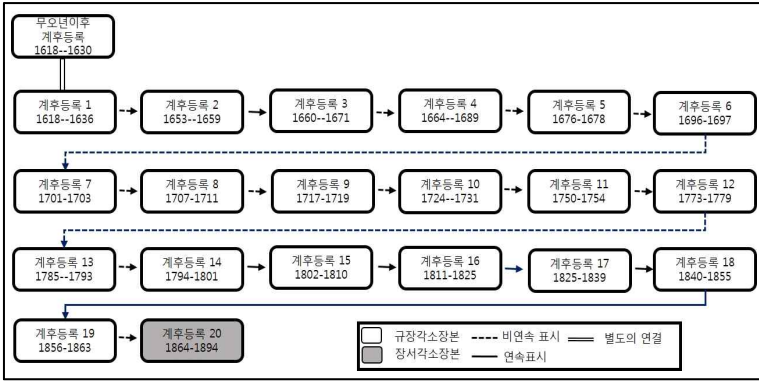
19세기 후반을 다루는 장서각본 『계후등록』은 규장각본 『계후등록』과 시기적으로 연결된다. 규장각본의 20책이 1863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이 그 이듬해인 1864년부터 갑오개혁이 이루어지는 1894년까지를 기록하고 있어 규장각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연호로 날짜를 기입하는 방식과 입후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형식도 이와 매우 흡사하여 규장각본 『계후등록』과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되며 그 위치는 맨 마지막에 해당된다.

이렇듯 두 소장처의 『계후등록』은 그 기재 양식에 따라 『계후등록』(가군)과 “별계후등록”(나군) 두 가지로 구분가능하고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4】,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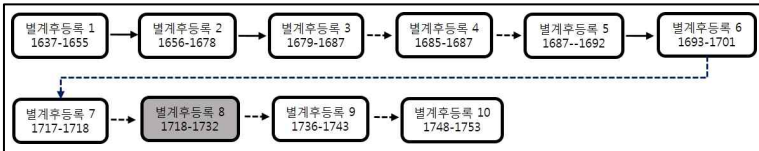
30) 박경, 앞의 논문.

31) 박경, 앞의 논문, 81쪽.

【그림 7】 “계후등록”(가군)의 연결도



【그림 8】 “별계후등록”(나군)의 연결도



그런데 현전하는 계후등록을 수록연도에 따라 정리하면 앞의 그림과 같이 불연속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며 각 책의 내에서도 불연속적인 기록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빠진 연도를 산정하여 전체 권수를 각각 36권과 13권으로 추정한 뒤, 없는 부분을 결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지만³²⁾ 이는 일종의 가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장서각본과 같이 소장처가 다른 『계후등록』에 대한 고려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각 책의 연도가 불연속적이며 혼입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계후등록』 중 1·2·3·4·10·

32) 최재석, 앞의 책, 590~594쪽.

13책의 수록 연도가 불연속적이며 『별계후등록』 5책의 수록 연도 역시 순차적이지 않다.

【표 1】 규장각본 『계후등록』의 1책과 2책에 수록된 기사의 연도
비교(1618~1636년간)

연도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책										
2책										
연도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책										
2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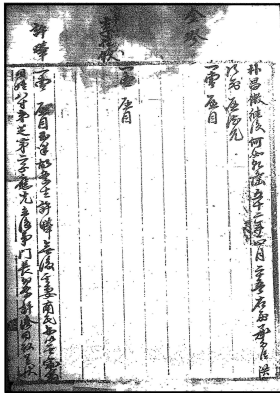
※ 해당 수록연도에 해당하는 칸을 진하게 표시하였음.

특히 규장각본 “계후등록 1”과 “계후등록 2”로 알려진 책의 경우 연도가 중첩되어 기록되어 있다. 위의 표는 각 책의 수록연도를 표시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1책과 2책은 연속적인 기록이 아니며 1618~20년, 1626~27년의 연도는 겹쳐서 나타난다. 더욱이 1책의 권수제가 “戊午年 以後 繼後臚錄”이라 되어 있고 2책의 권수제가 “繼後臚錄第一”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2책을 1책으로 정정한 뒤 나머지들은 현존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1책은 별본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같은 현상은 아마도 『계후등록』을 다시 찬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³³⁾ 다시 말해 1책은 전란으로 인해 소실된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며 2책부터 계후 사례를 본격적으로 기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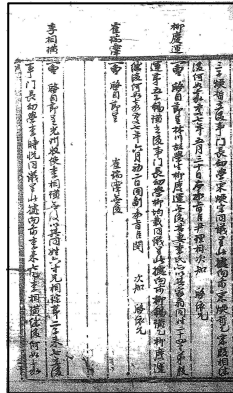
33) 임진왜란 이전에 『계후등록』이 편찬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명종대 南定國·南獬의 봉사쟁송을 통해 이 당시에도 예조에서 계후 사실을 기록한 등록이 존재하였음은 확인할 수 있다(『明宗實錄』 明宗 15卷, 8年 9月 11日). 또한 17세기 『계후등록』의 편찬은 특정 주제별로 등록이 세분화되어 편찬되는 시대적 조류와 궤를 함께 한다(김혁, 2002, 앞의 논문, 102~103쪽).

한편 『계후등록』에는 기록이 누락된 사례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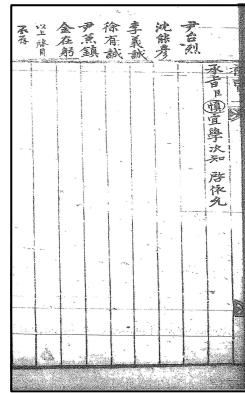
【그림 6】 계후등록의 기사누락 사례 1



【그림 7】 계후등록의 기사누락 사례 2



【그림 8】 계후등록의 기사누락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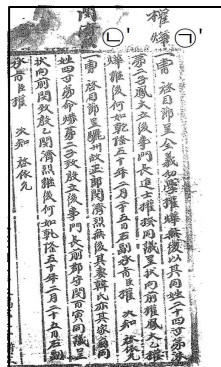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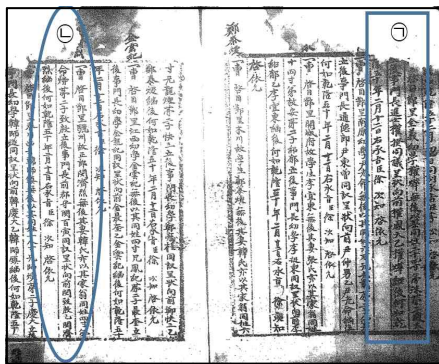
앞의 【그림 6】과 【그림 7】은 각각의 기사가 나열되는 중간에 공백이 존재하고 【그림 8】은 1817년의 기사가 정리된 말미에 공백이 존재한다.³⁴⁾ 그런데 난외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그림 6】에는 1787년 金繆와 李性欽의 계후사실이, 【그림 7】은 1802년 崔瑞霽의 계후사실이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림 8】에는 尹台烈, 沈能彦, 李義誠, 徐有誠, 尹兼鎭, 金在躬의 계후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 그 아래 “以上啓目不存”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³⁵⁾ 등록을 편찬할 당시 이들의 계목이 현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의 내용을 요약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성함만 나열한 것으로 추정된다.

34) 규장각본 『繼後謄錄』 14, 26a면; 규장각본 『繼後謄錄』 16, 9a면.

35) 규장각본 『繼後謄錄』 17 64a면.

【그림 9】 계후등록의 중복기술 사례 1

【그림 10】 계후등록의 중복기술 사례 2



이와 더불어 기사가 중복된 사실도 확인된다. 【그림 9】에서 ①은 1785년 幼學 權燁가 24촌 동생 權洙의 둘째 아들 權鳳대를 입후하는 사례이고 ②은 故正郎 閔濟烈의 처 韓氏가 가옹의 4촌 동생 閔命燾의 둘째 아들 閔致殷을 입후하는 사례를 각기 기록한 것이다.³⁶⁾ 그런데 【그림 10】과 같이 바로 뒷장에 권화의 입후 사례(①)와 동일한 내용의 ②이 민제렬의 입후 사례(②)와 동일한 내용의 ①'가 나타난다. 이 같은 공백과 중복은 『계후등록』이 연월일에 따라 정리되는 형식을 따르더라도 실제로는 몇년치의 기사가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나타난 오류로 추정되며 이는 여타의 등록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³⁷⁾

36) 규장각본 『繼後膳錄』 14, 3a~4a면. “乙巳(1785)正月日, … 一, 曹啓日節呈, 全義幼學權燁無後, 以其同姓二十四寸弟洙第二子鳳大立後事, 門長進士權揆同議呈狀, 向前權鳳大乙, 權燁繼後何如? 乾隆五十年二月二十五日, 右副承旨臣權次知. 啓依允.”; “一, 曹啓日節呈, 驪州故正郎閔濟烈無後, 其妻韓氏亦, 其家翁同姓四寸弟命燾第二子致殷立後事, 門長前郡守閔百寅同議呈狀, 向前閔致殷乙, 閔濟烈繼後何如? 乾隆五十年二月二十五日, 右副承旨臣權次知. 啓依允.”

37) 기존 연구에서, 등록의 작성주기는 그 형식이 일지와 같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매일

II. 『別繼後謄錄』과 法外繼後

1. 기존 개념의 검토

『계후등록』은 국가에서 가계계승과 관련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후일의 증빙을 목적으로 한다. 현존하는 『계후등록』은 17~19세기의 기록으로 내용의 대체적인 경향에 따라 『계후등록』과 『별계후등록』으로 구분하였다. 전술한 대로 『별계후등록』은 “法外繼後謄錄”으로 통칭되었고 여기에서 “法外繼後”의 의미가 출현하였다. “범외계후”는 일반계후와 달리 『경국대전』의 내용에 위배되는 계후로 정의되었고 『별계후등록』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 항목으로 세분화되었다.³⁸⁾

그러나 이러한 정의와 분류는 조선 후기 입후제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계후등록』에도 『경국대전』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형태의 입후를 포함하고 있으며 『별계후등록』에도 일반적인 계후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책의 표제만으로 내용을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입후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 이후에도 수교 내지 또다른 법전을 통해 범조문이 세분화되거나 수정되기도 하였다.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이해되었고(연갑수, 앞의 논문, 200쪽) 이는 『계후등록』의 편찬에도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의 조달기관인 용동궁에서 작성된 『龍洞宮謄錄』과 『龍洞宮公事冊』에는 날짜에 따라 상당 분량의 등서가 완료된 후, 새로 추가할 문서가 확인되면 여백 또는 난외에 기록하였고 누락으로 인해 추후에 등서했음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등록의 작성자에 대해서도 해당 조직의 인물뿐 아니라 등서를 담당할 자를 별도로 고용하였다는 사실은 등록 편찬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조영준, 2014, 「조선후기 宮房의 謄錄 작성과 고문서의 謄書 실태 - 『龍洞宮謄錄』·『龍洞宮公事冊』의 기초 분석-, 『古文書研究』 44, 한국고문서학회, 161~164쪽).

38) 최재석, 앞의 책, 590~594쪽.

특히 “범외계후”는 왕의 특별한 허가를 통해 모두 입후가 성립되었다고 설명되었으나 실제로 모든 범외의 계후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계후로서 인정되지 않았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타인의 장자를 입후하고자 하였으나 영의정 김수항의 반대로 무산된 교리 김만길의 경우를 볼 때³⁹⁾ 범외로 분류되는 각 유형은 시기별, 사례별에 따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하여 시기적인 변화에 따른 입후의 변화 양상, 즉 입후제의 운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장에서는 기존의 “범외계후”에 대한 의미부터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범외계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국대전』 「입후」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관에 고하여 동종의 지자를 세워 후사로 삼는다. 양가의 부가 함께 명하여 세운다. 부가 사망하였으면 모가 관에 고한다. 존속과 형제 및 손자는 서로 후사가 되지 못한다.⁴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①), 입후를 할 때는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야 한다. 둘째(②), 입후는 관에 고하여야 한다. 셋째(③), 양쪽 집안의 부모가 서로 동의해야 한다. 넷째(④), 부모가 입후를 신청해야 한다. 다섯째(⑤), 입후자는 동종의 지자로 양부와 같은 성씨를 지닌 조카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상 『경국대전』에서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에 범외계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존연구에서 범외계후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

39) 고민정, 앞의 논문, 304~305쪽.

40) 『經國大典』 「立後」, “嫡妾俱無子者, 告官, 立同宗支子爲後. 兩家父同命立之, 父沒則母告官, 尊屬與兄弟及孫, 不相爲後.”

보도록 하자.

法外繼後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 一邊父母(養父母 혹은 生父母)의 사망, ㉡ 兩邊父母의 사망, ㉢ 生父의 長子(獨子)의 입양, ㉣ 罷繼, ㉤ 神主棄置外孫의 처벌, ㉥ 移宗奉祀, ㉦ 罷繼歸宗, ㉧ 出繼死亡長子の 次子の 親祖父繼後, ㉨ 兄亡弟及, ㉩ 次養子, ㉪ 生家の 養子不許, ㉫ 未申告養子の 子를 繼奉祀孫으로 하는 경우, ㉬ 妾子承嫡, ㉭ 繼後相爭의 진상 조사, ㉮ 嫡庶紛爭 조사, ㉯ 生父母 생존 여부 조사, ㉰ 養孫과 親孫의 제사분담(養子は 養父母의 奉祀만 담당하고 祖父母 이상의 제사는 次子の 子인 親孫이 담당), ㉱ 王子·宗親·功臣의 奉祀人 결정 내지 分付施行 등 다양하다.⁴¹⁾

(※원 안의 문자는 필자)

앞의 내용에 따르면 ‘범외계후’로 지칭될 수 있는 종류는 모두 18가지이며, 이는 『별계후등록』에 수록된 기사를 대략 10년 단위로 추출하여 얻은 것으로 설명되었다. 구체적인 시기를 살펴보면 17세기는 1637~1697년을 중심으로 70년간 103건을, 18세기는 1717~1753년을 중심으로 37년간 179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써 해당 기간은 17세기가 18세기의 두 배에 해당되지만 해당 기사는 4 : 6의 비율로 18세기가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⁴²⁾ 또한 규장각본 『별계후등록』의 기사 건수가 1,456건임을 감안할 때, 이는 전체의 19%를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다.

그런데 『경국대전』의 내용과 기존의 분류방식을 비교해보면 분류된 18가지의 항목 중 6개가 법전과 상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11개의 경우 법전을 준수하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범외계후’의 정의와 분류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41) 최재석, 앞의 책, 639쪽.

42) 최재석, 앞의 책, 594쪽.

【표 2】『경국대전』 「입후」의 내용과 법외계후 항목의 비교

번호	『경국대전』 「입후」의 내용	법외계후로 분류된 항목
1	① 적처와 첩에게 아들이 없는 자	없음
2	② 관의 신고	① 未申告養子の 子를 繼奉祀孫으로 하는 경우
3	③ 양가의 동의	㉠ 一邊父母의 사망, ㉡ 兩邊父母의 사망, ㉢ 生家の 養子不許, ㉣ 生父母 생존 여부 조사
4	④ 부모에 의한 입후 신청	㉠ 一邊父母의 사망, ㉡ 兩邊父母의 사망
5	⑤ 동종의 조카항렬에 해당하는 자	㉣ 生父의 長子(獨子)의 입양

『경국대전』에 위배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일변부모의 사망(㉠), 양변부모의 사망(㉡), 생부의 장자 내지 독자의 입양(㉣), 생가의 양자불허(㉢), 미신고양자의 자를 계봉사손으로 하는 경우(㉠), 생부모의 생존 여부 조사(㉣)가 해당되며 이는 【표 2】에 정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처와 첩에게 아들이 없는 자(㉠)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실은 없고 관의 신고(㉡)에는 미신고양자의 자를 계봉사손으로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양쪽 가문이 입후에 동의하였으나 미처 관에 신고하기 전에 계후자가 사망한 사례이다. 계후자가 법적인 승계자로서 허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후자의 아들이 연이어 손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죽은 계후자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退出입안의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이다.⁴³⁾ 이 같은 사례는 입후 사실을 미리 관에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양가의 동의(㉢)에는 일변부모의 사망(㉠), 양변부모의 사망(㉡), 생가의 양자불허(㉢), 생부모 생존 여부 조사(㉣)가, 부모에 의한 입후신청(㉣)

43) 1753년 故學生 俞僞基의 처 安氏가 亡子를 계후 청원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규장각본 『別繼後瞻錄』 9, 74a~74b면).

에는 일변부모의 사망(㉑), 양변부모의 사망(㉒)이 포함된다. ㉑, ㉒는 양쪽 가문 중 한쪽 내지 양쪽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고 ㉓는 생가가 확고하게 입후를 반대하는 경우이며 ㉔는 상언 중에 생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예조에서 다시 조사한 경우이다. 즉 생가의 입후 동의 사실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입후를 허가할 수 없었고 조사 결과 생부모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후 그에 따라 관례대로 처리하였다. 또한 ㉒는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모에 의한 신고절차를 따를 수 없어 ㉑에도 속하게 된다. ㉑의 경우에도 만약 양가의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이 역시 ㉑의 규정에 어긋나게 된다. 법전에는 생가 내지 양가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양가의 부모가 입후를 청원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만약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였다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한 문족에 의한 청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종의 조카항렬에 해당하는 자(㉕)는 계후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생부의 장자 및 독자의 입양(㉖)이 해당된다. 이는 생부의 둘째 아들이하여야 입후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어기고 타인의 장자를 입후한 사례이다. 본래 장자는 해당 가문을 승계할 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입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일부 종친, 재신, 유현 등 및 여러 대를 봉사하는 가문에서 타인의 장자를 입후하는 형태가 나타났다.⁴⁴⁾

이와 달리 妾子承嫡(㉗)은 『경국대전』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항목이다.⁴⁵⁾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국대전』에서는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

44) 고민정, 앞의 논문, 306쪽.

45) 妾子承嫡의 항목에 제시된 것은 두 사례인데 1677년 李忠國의 봉사자를 그의 妾子 英萬으로 정한 것과 1748년 故學生 趙奎의 봉사자를 庶子 廷武로 정한 것이다. 이 두 경우는 법적으로 承嫡에 관한 국가의 허가가 필요 없으나 첩자에 의한 承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안을 청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규장각본 『別繼後曆錄』 2, 99b면; 『別繼後曆錄』 9, 12a~13a면).

이 없는 자만이 입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첩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입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첩자에 의한 가계승계는 사회적으로 기피되었기 때문에 국왕의 특별한 허가를 통해 첩자가 있음에도 입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⁴⁶⁾ 다시 말해서 『경국대전』에 어긋나는 형태는 친생자인 첩자에 의해 가계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첩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적자인 계후자를 입후하여 가계를 잇도록 한 것이다.

그 밖에 『경국대전』과 상관없는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서 罷繼歸宗(㉔)은 수교를 통해 정식화된 내용이다. 과거귀종은 입후가 성립된 뒤 생가가 도리어 대가 끊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계후자를 파악시켜 본가로 돌려보내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⁴⁷⁾ 이는 양가보다 생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관념에서 발로된 것으로 명종 대에 세워진 원칙이다.⁴⁸⁾ 그러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지 않아도 법전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수교집록』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⁴⁹⁾ “법외”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兄亡弟及(㉕)은 적장자가 후사가 없이 사망했을 때 그의 동생에게 봉사권이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입후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라 입후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계승 방식이다. 즉 형망제급은 중법적

46) 배재홍, 앞의 논문, 247~253쪽.

47) 김두현, 앞의 책, 267~268쪽; 피터슨, 앞의 책, 176~178쪽.

48) 『受教輯錄』 「禮典」 “爲人後者, 本生父母絕嗣, 則罷繼歸宗, 許其所後家改立. 若其父母已死, 不得改立, 則從旁親班祔例, 俾不絕祀. [嘉靖甲寅承傳]”; 한국역사연구회, 2001, 『수교집록』, 청년사, 140쪽.

49) 『수교집록』의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조된다.

연정열, 1987, 「수교집록에 관한 일연구」, 『한성대논문집』 11-1, 한성대학교; 한상권, 1994, 「자료소개: 조선시대 법전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현실』 13, 한국역사연구회; 구덕희, 1997, 「각사수교·수교집록·신보수교집록 해제」, 『각사수교·수교집록·신보수교집록』, 서울대규장각; 홍순민, 1998, 「조선후기 법전 편찬의 추이와 정치운영의 변동」, 『한국문화』 2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구덕희, 2002, 「자료소개: 법전으로 역사읽기 - 집록류 법전의 성격-」, 『역사와 현실』 46, 한국역사연구회; 김백철, 2007, 「朝鮮後期 肅宗代 『受教輯錄』 편찬과 성격 - 體裁 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40, 연세대 국학연구원.

가계승계 방식의 하나로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 널리 사용되던 방식이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입후가 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⁵⁰⁾ 따라서 입후의 하위범주로서 “범외 계후”를 상정한 뒤 그 속에 형망제급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없다.

王子·宗親·功臣의 봉사인의 결정 내지 분부시행에 관한 항목(㉔)은 기존 견해에서, 이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되었기 때문에 『계후등록』이 아닌 『범외계후등록』에서 취급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⁵¹⁾ 그러나 왕자, 종친, 공신의 계후 중 특별히 논할 사항이 아닌 경우는⁵²⁾ 『계후등록』에 기술되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왕자, 종친, 공신의 계후 중 장자를 계후하는 사례, 한쪽 내지 양쪽의 부모가 사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례 등은 앞의 항목에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중복 분류되었다.

2. 法外의 의미

앞서 “범외계후”의 기존 개념과 분류방식에 대해 고찰하였으나 정의에 따른 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범외계후”가 17세기 이후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와 같은 연대기 관찰사료에서 그 용례를 살펴보

50) 李舜九, 앞의 논문; 김윤경, 2002, 「朝鮮中期 祭祀承繼와 兄亡弟及의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20, 조선시대사학회.

51) 최재석, 앞의 책, 643쪽.

52) 『繼後謄錄』에서 왕실 및 왕실의 친인척에 관한 계후사실은 여러 차례 나타난다. 예를 들면 1620년 西昌守 李堉이 형 西平守 李堉의 셋째 아들 秀立을 계후한 사례, 1689년 花川副正 李滉가 6촌형 瀛昌君 沈의 셋째 아들 楫을 계후한 사례, 1794년 安昌君 李燦이 24촌형 李錫祚의 둘째 아들 昌得을 계후한 사례 등이 있다(규장각본 『繼後謄錄』 2, 11b면; 규장각본 『繼後謄錄』 5, 41b~42a면; 규장각본 『繼後謄錄』 15, 9b면).

면, 해남 윤씨 가문의 후사문제를 논의하는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빈번하게 쓰이던 용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執義 李端夏 등이 啓하였다. “오늘 본부의 개좌에, 海南에 거주하는 學生 尹善言의 처 元氏가 직접 와서 呈狀하였다.

그 정장의 사연을 보면, ‘… (중략) … 지난 겨울 尹禮美가 과거 때문에 상경한 후에 몰래 尹爾厚를 취하여 입후할 계획이 있어 온천에 거둥하는 날 거짓으로 상언하여 尹義美의 생시에 상의하여 이미 입후를 정하였다고 말하고 입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윤이후는 유복자로서 태어난 지 겨우 수일 후에 그 모친이 또 사망하였고 그 때 윤예미는 겨우 18세로 혼인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아들이 없을 것을 알고 미리 그의 입후를 의논했겠는가? **그 범외계후를 파하기를 바란다.**’ 하였다.”⁵³⁾

(※ 밑줄 및 강조 필자, 이하 동일.)

앞의 내용은 尹禮美가 생가와 상의 없이 거짓으로 상언하여 尹義美의 아들 尹爾厚를 입후한 일에 대하여 尹善言의 처 元氏가 바로잡아 줄 것을 呈狀한 것이다. 원씨의 정장 중에 “범외계후”가 등장하며 이 때 범외계후는 불법적인 계후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양쪽 가문의 동의 를 얻은 후에야 입후가 성립한다는 입후의 원칙이 형식적으로는 지켜졌으나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계되어야 하는 위법적 계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불법적인 着名の 위조가 우선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파계는 물론이고 관련자 역시 법에 따라 처벌되었다.⁵⁴⁾

그러나 “범외계후”의 용례를 제외하고 “法外”로 분류되는 사례들은 이처럼 불법적으로 성립된 계후를 의미하지 않는다. 『별계후등록』에서

53) 『承政院日記』 顯宗 10年 12月 14日; 『顯宗實錄』 10年 12月 14日; 『顯宗改修實錄』 10年 12月 14日.

54) 『承政院日記』 肅宗 26年 1月 26日; 『承政院日記』 肅宗 26年 1月 27日.

법의임을 알려주는 단서는 “法外之事”, “格外之事”, “規外之事”, “係是法例”, “係是規外”, “係是法外”, “有違法例”, “有違規例”, “實違法例”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1) 고유학 정온의 처 조씨의 상언 내용에, 가옹의 둘째 아우 정형의 둘째 아들 정원로를 입후할 것을 예조계목에 의거하여, 대개 계후의 법은 필시 두 가문이 동의하여 정당한 후에 입후를 허락한다. 그러나 만약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다면 혹은 상언을 올려 입후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많았으며 **법외의 일**은 아래에서 제멋대로 할 수 없으니 상재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⁵⁵⁾

(2)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이것이 **법외에 관계되니** 예조에서 감히 제멋대로 할 수 없으니 상재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⁵⁶⁾

(3) 이미 지자가 아니면 이것은 곧 **법외이기** 때문에 례에 따라 입후할 수 없으나 이것은 국구의 봉사와 관계되어 아래에서 감히 제멋대로 할 수 없으니 상재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⁵⁷⁾

(1)의 내용은 1638년 유학 鄭燾의 입후와 관련된 기록이다. 예조가 정온의 처 조씨가 올린 상언을 검토한 뒤 양쪽 부모가 모두 동의하여야 입후가 성립한다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이 법외의

55) 규장각본 『別繼後瞻錄』 1, 8b면. “戊寅(1638)十二月二十五日, … 故幼學鄭燾妻趙氏上言內, 家翁次弟炯次子元老立後事, 據曹啓目, 凡繼後之法, 必兩家同議呈狀, 然後許令立後, 而若一邊父母俱歿, 則或呈上言, 蒙恩立後亦多有之是白乎矣, 法外之事, 自下不敢擅便, 上裁何如?”

56) 규장각본 『別繼後瞻錄』 2, 44b면. “丙午(1666)九月十八日, … 兩邊父母俱歿, 係是法外, 臣曹不敢擅便, 上裁何如?”

57) 규장각본 『別繼後瞻錄』 2, 85b면. “乙卯(1675)七月初五日, … 旣非支子, 則此乃法外, 不可循例立後, 而係是國舅奉祀, 自下不敢擅便, 上裁何如?”

일임을 국왕에게 보고하고 재결을 받고자 한 것이다. (2)는 1666년 昌寧府院君 曹錫文의 후손가문에서 입후하고자 하였으나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1)과 같은 『경국대전』의 항목에 어긋났기 때문에 법외에 해당되었다. (3)은 1675년 淸風府院君 金佑明의 후손가문에서 지자가 아닌 타인의 장자를 입후하고자 했기 때문에 『경국대전』의 동종지자의 항목에 합치되지 않아 법외로 분류되었다. 즉, 예조는 개별 가문의 입후신청이 있으면 이를 『경국대전』과 비교한 뒤 그 내용이 합치되지 않으면 법외로 분류하여 국왕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조에서 지칭하는 법전은 『경국대전』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4)의 내용은 1669년 尹釜의 봉사손 尹重鳴이 후사 없이 사망하여 삼촌에게 입후되었던 윤중명의 동생 尹彦鳴을 파계귀종하여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한 것이다. 이 가운데 법전의 내용으로 명시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던 생가가 절사했을 경우 이미 성립된 입후의 파계를 허락한다는 명종조의 수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조에서 법외로 규정하는 범주는 『경국대전』을 비롯한 각종 법전 및 수교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 이번에 올린 예조계목에, “유학 윤휘의 소지 내용에, “사촌형 윤구의 장자 윤중명은 명종조 청백리 호조참판 尹釜의 봉사손으로 후사 없이 사망하여 달리 계후할 사람이 없어 그의 아우 윤언명을 삼촌 윤극의 후사로 출계하였다가 윤중명이 이미 후사 없이 사망하였은즉 윤구는 아들이 있으면서 아들이 없으니 그의 차자 윤언명을 법에 의거하여 歸宗할 것”을 정장 하였습니다. **법전의 내용에 소생부모가 후사가 없으면 파계귀종한다고 하였으므로** 앞의 윤언명을 법에 의거하여 귀종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⁵⁸⁾

58) 규장각본 『別繼後瞻錄』 2, 65a면. “己酉年(1669)十月初五日, … 曹啓目節呈, 幼學尹

『별계후등록』의 내용에 따라 예조에서 범외로 구분한 계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첩자가 있으나 동종의 적자로서 입후를 요청하는 사안이다. 둘째는 양쪽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안으로 한쪽 내지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생가가 반대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셋째는 계후자가 同宗支子에 해당되지 않은 사안으로 長子·獨子 또는 亡子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 같은 종류의 계후는 최종적으로 왕의 재결에 따라 입후의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범외로 분류된 모든 계후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만약 왕의 허가에 의해 입후가 성립되면 이는 일반적인 계후와 동등한 효력이 발휘되었다. 일례로 1648년 韓明澮의 후손가문에서는 적장손 韓汝復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동생 韓汝謙의 장자를 입후하는 청원을 올려 허가받았다.⁵⁹⁾ 이후 한여복의 또다른 동생 韓汝晉에 의해 입후의 부당성이 제기되었으나 예조에서는 이미 입후가 허락되었다면 계후자가 타인의 장자인지 차자인지는 중요하게 논할 바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였다.⁶⁰⁾

한편 현존하는 『별계후등록』에서 범외로 분류되었던 사안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 만약 기준이 되는 법전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일반적인 계후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 앞서 범외로 구분한 계후의 유형 중에 특히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후하라는 수교가 1765년

徽所志內, 同姓四寸兄尹教長子重鳴, 以明宗朝清白吏戶曹參判尹釜奉祀孫, 無後身死, 而他無繼後之人, 其弟彥鳴出繼於三寸叔尹克之後爲有如乎, 重鳴既爲無後身死, 則尹教有子而無子, 其次子彥鳴依法歸宗事, 呈狀是白有亦, 法典內, 所生父母無後, 則罷繼歸宗亦爲白有置, 向前尹彥鳴乙, 依法歸宗何如?”

59) 규장각본 『別繼後謄錄』 1, 37a면. “戊子(1648)三月二十五日, … 且士夫間, 以其同生之長子取養立後者, 非止一二是白置, 今此韓汝復之願爲繼後, 明有前例是白乎矣, 似與法典有異, 該曹不敢擅便, 上裁何如? 啓情理切迫依願施行.”

60) 규장각본 『別繼後謄錄』 1, 73b면. “壬辰(1652)七月初三日, … 其兄汝復以韓明澮之嫡長孫, 又參靖社正勳, 而無後身死, 則爲功臣立後明有國法是白去等, 因其呈單, 特許依願, 則長子次子非所當論是白乎旣”

에 내려졌기 때문이다.⁶¹⁾ 이로서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후입후를 허용하였으며 이는 1785년 편찬된 『대전통편』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그리고 1865년 『대전회통』에서는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도 입후를 허락하는 형태로 확대되었다.⁶²⁾ 그러므로 1765년 이후 한쪽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조에 의해 범외로 분류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 시기의 『별계후등록』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확인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범외계후는 그 성립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성립된 계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나 예조에서 사용한 범외의 개념은 개별 가문의 입후 청원을, 기준이 되는 법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 경우의 계후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왕의 특별한 허가에 의해 법적효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이 때 범외의 개념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안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며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맺음말

이상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가계계승의 성격을 탐구하기 위해 기본 자료인 『계후등록』의 기술방식과 이로부터 파생된 “범외계후”에 대한 기존 개념 및 그 유형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는 『계후등록』이 가계계승의

61) 『承政院日記』英祖 41年 5月 16日. “必曰情雖可矜, 一邊父母俱無, 事當勿施, 而乙酉五月十六日筵中, 此後此等人, 特許立後事有教, 依受教, 特爲立後之意, 回啓事, 奉承傳施行.”

62) 정궁식, 앞의 논문, 84~86쪽.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의 성격을 고찰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계후등록』은 예조에서 입후와 관련된 사실을 기록하여 향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편찬한 기록물로 17~19세기에 해당되는 대략 15,000건의 기사가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개별 가문의 입후 청원 사실과 허가 여부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이외에도 과거의 청원과 허가 여부, 봉사갈등으로 인한 법적분쟁, 유현 및 공신 등의 봉사자 선정, 입후제 운영에 대한 대신간의 논의 등이 포괄되어 있다.

『계후등록』은 크게 『계후등록』과 『별계후등록』으로 구분된다. 이는 양자의 내용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일반적인 계후사실을 기록한 것을 『계후등록』으로, 특별한 계후사실을 기록한 것을 『별계후등록』으로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 시기, 특정 주제를 연구할 때에는 양자가 모두 활용되어야 하며 또한 소장처에 따른 구분 역시 무의미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한편 “범외계후”는 법전의 내용에 위배되었으나 계후가 성립된 것으로 정의되어 조선 후기 입후제 운영의 특징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기준으로 제시된 법전이 『경국대전』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시기를 포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하위 항목으로 분류된 유형이 “범외계후”의 정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외계후”는 불법적으로 성립되어 파계되어야 할 사안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국왕의 특별한 허가에 의해 성립된 계후들과도 구분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별계후등록』에 나타난 범외라는 용어는 예조가 개별 가문의 청원을 법적 요건의 잣대에 따라 분류한 뒤 국왕에게 보고할 때 나타난다. 이 때 법적 요건은 『경국대전』를 비롯한 각종 법전 및 수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범외의 의미가 변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범외에 해

『繼後臚錄』의 기술방식과 法外繼後에 대한 재검토

당된 계후가 모두 국왕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선 후기의 제도적 변화 및 사회적 정서가 우선 고려된 상황에서 시기별 입후 형태의 변화를 해명해야 하겠다.

【부표】『계후등록』 일람표

번호	분류	이름	수록 연도	건수	소장처 분류
1	가군	繼後謄錄 1	1618~1627, 1630	3년간	340건 奎 12869 v.1
2		繼後謄錄 2	1618~1620, 1626~1629, 1632~1636	12년간	440건 奎 12869 v.2
3		繼後謄錄 3	1653~1659	7년간	582건 奎 12869 v.3
4		繼後謄錄 4	1660~1667, 1671	9년간	532건 奎 12869 v.4
5		繼後謄錄 5	1664, 1666, 1668~1675, 1678, 1687~1689	14년간	322건 奎 12869 v.5
6		繼後謄錄 6	1676~1678	3년간	415건 奎 12869 v.6
7		繼後謄錄 7	1696~1697	2년간	427건 奎 12869 v.7
8		繼後謄錄 8	1701~1703	3년간	378건 奎 12869 v.8
9		繼後謄錄 9	1707~1711	5년간	667건 奎 12869 v.9
10		繼後謄錄 10	1717~1719	3년간	312건 奎 12869 v.10
11		繼後謄錄 11	1724, 1731~1734	5년간	592건 奎 12869 v.11
12		繼後謄錄 12	1750~1754	5년간	567건 奎 12869 v.12
13		繼後謄錄 13	1773~1779	7년간	1,051건 奎 12869 v.13
14		繼後謄錄 14	1785, 1787~1793	8년간	908건 奎 12869 v.14
15		繼後謄錄 15	1794~1801	8년간	1,075건 奎 12869 v.15
16		繼後謄錄 16	1802~1810	9년간	886건 奎 12869 v.16
17		繼後謄錄 17	1811~1825	15년간	878건 奎 12869 v.17
18		繼後謄錄 18	1825~1839	15년간	837건 奎 12869 v.18
19		繼後謄錄 19	1840~1855	16년간	795건 奎 12869 v.19
20		繼後謄錄 20	1856~1863	8년간	340건 奎 12869 v.20
21		繼後謄錄	1864, 1866~1867, 1869~1889, 1891~1894	29년간	1,062건 K2-3628
22	나군	別繼後謄錄 1	1637~1655	19년간	157건 奎12903 v.1
23		別繼後謄錄 2	1656~1678	23년간	224건 奎12903 v.2
24		別繼後謄錄 3	1679~1687	9년간	118건 奎12903 v.3
25		別繼後謄錄 4	1685~1687	3년간	111건 奎12903 v.4

『繼後臚錄』의 기술방식과 法外繼後에 대한 재검토

26	나군	別繼後臚錄 5	1687~1689, 1691~1692	5년간	157건	奎12903 v.5
27		別繼後臚錄 6	1693~1701	9년간	212건	奎12903 v.6
28		別繼後臚錄 7	1717~1718	2년간	82건	奎12903 v.7
29		繼後臚錄	1718~1732	15년간	114건	K2-4757
30		別繼後臚錄 8	1736~1743	8년간	235건	奎12903 v.8
31		別繼後臚錄 9	1748~1753	6년간	160건	奎12903 v.9
총 합	가· 나군	총 31책	17~19세기(도합 235년간)		14,976건	총 2곳

※ 이 수치는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된 『계후등록』의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건의 기사가 나오는 경우에도 모두 개별 건수로 집계하였고 기사의 중복 또는 기사의 일부가 결락된 경우에도 유효 건수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계후청원자의 성함만 있고 그 내용이 없는 경우는 건수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문헌

1. 자료

『經國大典』

『繼後臚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明宗實錄』

『別繼後臚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受教輯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顯宗改修實錄』

2. 논저

고민정, 2013, 「17세기 장자의 계후와 그 특권적 성격」, 『태동고전연구』 31, 태동고전연구소.

金斗憲, 1983,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김혁, 2000, 「藏書閣 소장 臚錄의 문헌학적 특성」, 『藏書閣』 4, 장서각.

金赫, 2002, 「朝鮮後期 中央官廳 記錄物에서 臚錄의 위상」, 『書誌學報』 26, 서지학회.

마크 피터슨 저, 김혜정 역, 2000, 『儒敎社會의 創出-조선중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일조각.

박경, 2011, 「罷繼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의 입후법 운용-장서각 소장 『繼後臚錄』을 중심으로-」, 『장서각』 25, 한국학중앙연구원.

박경, 2011,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해안.

배재홍, 1995, 「朝鮮後期の 庶孽 許通과 身分地位의 變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大學校圖書館 편, 1982,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史部 2) V』, 서울大學校出版部.
- 延甲洙, 2000, 「朝鮮後期 臚錄에 대한 研究」, 『外大史學』 12, 한국외국어대학교.
- 정공식, 2010, 「조선시대의 가계계승법제」, 『서울대학교 法學』 51, 서울대학교.
- 조영준, 2014, 「조선후기 宮房의 臚錄 작성과 고문서의 臚書 실태 -『龍洞宮 臚錄』·『龍洞宮公事冊』의 기초 분석-」, 『古文書研究』 44, 한국고문서학회.
- 최연숙, 2005,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崔在錫, 1996,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 한국역사연구회, 2001, 『수교집록』, 청년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2, 『古文書集成 一 -光山金氏 烏川古文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Abstract

Re-examination on the Description Method of 'Gyehu Deungrok(Resgistration Document of Adopted Sons)' and the System of Adopted Sons outside the Law

Ko, Min-Jung

This paper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parparing for the basic foundation in family success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by synthetically considering 'Gyehu deungrok'. It wa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 in order to be used as a future reference, from recording facts of adopted sons permitted from the country and relevant facts discussed at the Royal court. The existing 'Gyehu deungrok' is applicable to the 17th~19th century, about 15,000 facts of adopted sons are recorded. These are divided into 'Gyehu deungrok' and 'Byeol-gyehu deungrok(supplementary registration document of adopted sons)'. There is the character that they were owned by Gyujang-gak(royal library) and Jangseo-gak(national archives) separately according to the contents.

Along with the purpose, this study re-examined the concept and types of 'Beop-owe Gyehu (adopted sons outside the law)' derived from the contents of 'Byeol-gyehu deungrok'. 'Beop-owe Gyehu' was understood as the character of operation of the empress sytem of the late Joseon. But, there was a problem that the criterion was restricted to 'Gyeongguk daejeon

(complete code of law that comprises every law, acts, customs, and ordinances)’. It is necessary that the type is also to be arranged to a consistent criterion. Moreover, since there is an aspect that the meaning of outside of the law is changed according to times, the meaning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systematic change and social emo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 family succession, adopting sons, Gyehu Deungrok(繼後謄錄), family institution, Byeol-gyehu deungrok(別繼後謄錄)

